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용인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용인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자 **모집접수** 마감일은 2025.08.22.(금)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 아래 대상은 **추가모집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자 (중복 수혜 불가)
 -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선정자 (중복 수혜 불가)
 -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자 (중복 수혜 불가)
 - * 2024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지원 받은 대상자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온라인 홍보 수행 (상세페이지/키워드광고)	결과물 제출 및 증빙
'25.08.18(월) ~ '25.08.22(금)	'25.08.29(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5.11.28(금)	완료 후 ~'25.12.31(수)

※ 기간 내 한정 인원 접수 운영되며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접수가 마감됩니다.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 용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접수기간 : 2025. 08. 18.(월) 09:00 ~ 08. 22.(금) 18:00 / 5일간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현장접수 : 경기도 용인시청 **본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 (대중교통 이용) 경전철 시청.용인대역 1번출구 도보 5분

버스(66번, 10번 등) 시청.용인대역 정류장 도보 10분

* 접수 기간 내 **점심시간 (오후 12시 - 13시)**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5. 08. 29(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지원내용 :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최대 100만원 이내
키워드 광고비용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광고비용 지원(충전)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상세페이지 혹은 키워드 광고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1업체 당 단위 사업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 → 대행사로 비용 지급

(예2) 키워드 광고 비용 지원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 용인시 → 대행사로 비용 충전 후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게시

• 지원 불가사항

- 상세페이지 / 키워드 광고 지원 외 다른 지원 및 사업변경 불가(ex. 홈페이지 제작)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온라인 홍보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및 제5-1,2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온라인 홍보 관련 유의사항

- 홍보대행사는 용인시에서 지정한 홍보대행사로 제한
- 지정 홍보대행사가 아닌 업체에 온라인 홍보 사업 위탁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규모 : **22개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 **기간 내 한정 인원 접수 운영되며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접수가 마감됩니다.**

○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필수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제1·2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확인)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4년 필수)(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미납 지원 불가 - 국제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해당시	7. 우대조건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우대사항(가점부여)
 - 용인시 거주자 (1점, **주민등록초본** 제출,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임차인 (1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지역화폐 가맹점 (1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창업 6개월 이내 신규창업자 (1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직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1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1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 가족관계증명서 내 2006.1.1. 이후 출생 자녀이면서, 가족사항 내 '자녀' 표기된 인원 기준, 대표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필수
 - 착한가격업소 (2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백년소상공인(2점, 백년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제출,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2점, **다른 2점 사항과 중복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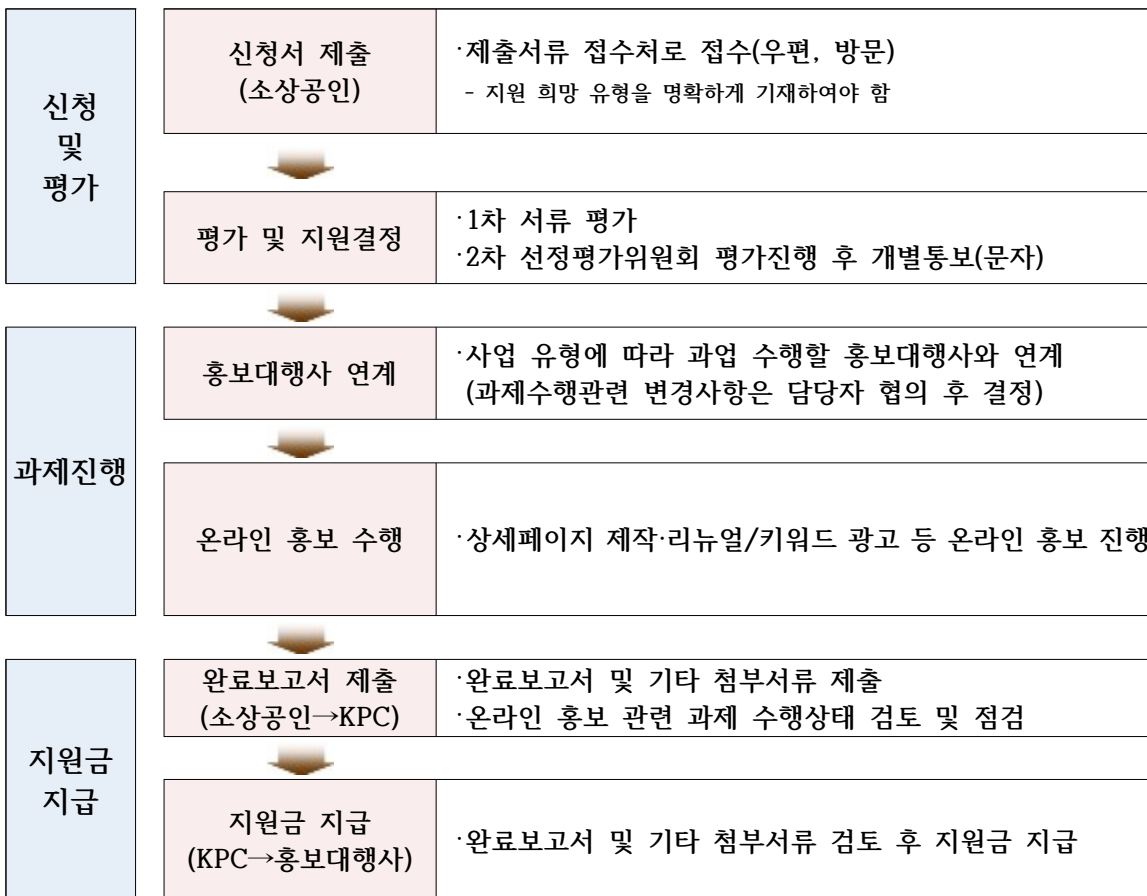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정량평가 고득점 > 정성평가 고득점 > 개업일 높은순서로 선정자 결정

구분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정량평가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현황(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 ■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정성평가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연관성(사업계획, 지원내용, 수행의지) ■ 사업 타당성(소요비용, 기대효과)
가산점수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거주자 1점 ■ 임차인 1점 ■ 지역화폐 가맹점 1점 ■ 창업 6개월 이내 신규창업자 1점 ■ 직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1점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1점 ■ 착한가격업소 2점 ■ 백년소상공인 2점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2점(다른 2점 사항과 중복 불가)

○ 지원절차



※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포기서식 제7호)

4. 사업 운영 지침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용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 2025년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신청 할 수 없는 대상(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자 (중복 수혜 불가)
 -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선정자 (중복 수혜 불가)
 -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자 (중복 수혜 불가)
 - * 2024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지원 받은 대상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제작 또는 광고비를 충전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결과물에 대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온라인홍보 과업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지원 포기의 경우【제7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용인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

- 1)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소상공인 사업자가 외주 업체 통해 작업한 결과물 및 견적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2) 키워드 광고: 소상공인 사업자가 외주 업체 통해 키워드 광고 수행 후, 광고비 충전 및 소진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홍보대행사)

- 용인시에서 지정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4호 서식】사업완료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결과물 관련 견적서 또는 광고비 충전 및 소진 내역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02-398-4306 02-724-1266 02-724-1113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kpc.or.kr/>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지원사업/이벤트' 클릭

→ "2025년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모집" 바로가기 클릭

☞ <https://www.yongin.go.kr/> 메인화면 → 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비용지원사업 추가모집 팝업 및
시정소식 - 새소식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별표1]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